◉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-104호

2024년도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 공고

2024년도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4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1. 자격시험 합격자

□ **합격자 명단 :**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참고[붙임1]

○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(www.vt-exam.or.kr)의 '합격자 확인'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(공고일로부터 3.18일까지)

2. 합격자 제출서류(필수)

□ **제출기간** : 2024. 3. 4.(월) 18:00 ~ 3. 18. (월) 18:00

*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(토요일, 공휴일 포함)

□ **제출방법** :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(www.vt-exam.or.kr)

○ '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' 접속 후 로그인 → 메인 화면의 메뉴에서 '나의 시험정보/나의 응시결과' → 관련 서류 업로드

□ **공통 서류** ※ ①, ② 서류 모두 제출

①「수의사법」제5조제1호 본문*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

*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
② 「수의사법」 제5조제3호 본문*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

* 마약, 대마(大麻),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(向精神性醫藥品) 중독자

□ 개별 서류 ※ 본인이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

1. 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

○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"졸업(예정)증명서"

* 졸업예정증명서의 졸업예정일은 '24.8.24일 이전이어야 함(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일인 '24.2.25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※ (참고사항)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교육기관(13개소, 인증 유효)

* 연성대학교(반려동물과), 전주기전대학(동물보건과), 공주대학교(특수동물학과), 대전과학기술대학교(반려동물학과), 서정대학교(동물보건과), 수성대학교(반려동물보건과), 우송정보대학(동물보건과), 연암대학교(동물보호계열 동물보건학과), 경인여자대학교(반려동물보건학과), 계명문화대학교(반려동물보건과), 동원대학교(동물보건과), 대구보건대학교(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), 영진전문대학교(동물보건과)

2. 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제16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

○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"입학증명서", "졸업(예정)증명서", 동물간호 관련 교과목 및 학점([붙임2] 자료 참고)을 이수한 "성적증명서"

* 졸업예정증명서의 졸업예정일은 '24.8.24일 이전이어야 함(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일인 '24.2.25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※ (참고사항)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교육기관(7개소, 인증 종료)

* 부산경상대학교(반려동물보건과), 부산여자대학교(반려동물과), 원광대학교(반려동물산업학과), 장안대학교(바이오동물보호과), 대경대학교(동물사육복지과), 신구대학교(애완동물과), 중부대학교(동물보건학과)

3. 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 : '24.3.4일 기준 해당자 없음

4. 「수의사법」 제16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

①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이나 자격증

②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[붙임3] 자료 참고)

5.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해당자

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([붙임4] 자료 참고)을 이수*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

*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4개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'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' 중 임상 관련 교과목(예방 및 임상 동물보건학에 속하는 교과목)을 10학점 이상 포함하여 총 20학점 이상

②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(120시간)

※ '24.2.23.(금) 24:00까지 이수하여야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인정

6.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 해당자

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졸업증명서*

* 졸업이 아닌 학위(전문학사 이상) 취득자는 학위 취득 증명서 제출

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(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에 관한 업무 1년 이상 종사*)

* (종사기간 인정)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'21.8.28일까지를 종사 기간으로 인정

※ 「동물병원 종사증명서」 서식은 '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'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

③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

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(120시간)

※ '24.2.23.(금) 24:00까지 이수하여야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인정

7.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호 해당자

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

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(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에 관한 업무 3년 이상 종사)

※ 「동물병원 종사증명서」 서식은 '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'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

③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

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(120시간)

※ '24.2.23.(금) 24:00까지 이수하여야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인정

3.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

○ 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내 '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'에 공통 및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(업로드)하지 않을 경우, 당해 시험 합격이 취소되며,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수의사법 제16조의6(준용규정)에서 준용하는 제5조(결격사유), 제9조의2(수험자의 부정행위)를 확인하여 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
- 자격증 발급 이후에도 결격사유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증 발급을 취소하거나, 그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.

-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○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기타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(☎ 044-201-265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(www.vt-exam.or.kr) 및 서류 제출(업로드) 관련 문의 사항은 대한수의사회(☎ 031-702-8686)로 연락